



의안번호	제45호
------	------

<p>논산시소하천점 · 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7. 12.

논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5호
----------	------

제출연월일 : 2018. 7. 12.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가 제정되어있음.
-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하한선 개정함(안 제2조)
- 나. 부과시기를 명시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02. 21. ~ 2018. 03.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규제 심사 : 해당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 실적 : 하천안전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를 “논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600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월이내에 징수한다”를 “3월 말까지 부과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시자”를 “시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논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논산시소하천 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안	하 천 팀 장	김 용 신 (746-6331)
자	담 당 자	복 시 현 (746-6336)

[별표 1]

점 ·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이하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3/100
2. 토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95. 7. 6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점용할 수 있다.</p> <p>다. 공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75/100</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공시지가 표준액의 1.5/100</p>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 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²/sec 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경 25m/m이하 월액 10,000원 · 관경 50m/m이하 월액 40,000원 · 관경 75m/m이하 월액 60,000원 · 관경 100m/m이하 월액 100,000원 · 관경 200m/m이하 월액 1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경 300m/m이하 월액 160.000원 · 관경 400m/m이하 월액 220.000원 · 관경 500m/m이하 월액 280.000원 · 관경 600m/m이하 월액 360.000원 · 관경 700m/m이하 월액 500.000원 · 관경 800m/m이하 월액 600.000원 <p>※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치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m³ 당 200원씩 적용한다.</p> $\text{초당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2m)}}{1462 \times 60}$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 ~ 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 0.5m³/sec 증가시 마다 10.000원씩 가산
5. 지하수의 유 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 (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p> <p>제4항 나목의 3분의 1</p> <p>※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p> <p>기타 법 제14조에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항 나목의 4분의 1 <p>※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7.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허가당시 조사한 토석 모래 · 자갈 · 도매가격의 평균치의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 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탈의장(매장 포함)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위한 점 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1/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u>논산시소하천점 · 사용료등부과및 징수조례</u></p>	<p><u>논산시 소하천 점 · 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u></p>
<p>제2조(점 · 사용료등의 부과기준)</p> <p>①----- ----- -----<u>600원</u>----- ② ~ ④ (생 략)</p>	<p>제2조(점 · 사용료등의 부과기준)</p> <p>①----- ----- -----<u>2천원</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 · 사용료등의 부과 · 징수) ① 점 · 사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u>3월이내에 징수한다.</u></p> <p>② ~ ④ (생 략)</p>	<p>제3조(점 · 사용료등의 부과 · 징수) ① ----- ----- ----- ----- ----- -- <u>3월 말까지 부과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무의 위임) <u>시자</u>은 소하천 점 · 사용료등의 부과 ·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를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6조(사무의 위임) <u>시장</u>----- ----- ----- ----- ----- -.</p>

[별표1]

점 ·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구분	부과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이하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3/100
2. 토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95. 7. 6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점용할 수 있다.</p> <p>다. 공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75/100</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공시지가 표준액의 1.5/100</p>
3. 소화	제 1항에 준한다.

[별표1]

점 ·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구분	부과기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 표준액(이하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이라 한다)의 3/100
2. 토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유사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미식 부지에 대하여는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95. 7. 6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점용할 수 있다.</p> <p>다. 공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0.75/100</p> <p>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p> <p>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 공시지가 표준액의 1.5/100</p>
3. 소화 천 부속물의	제 1항에 준한다.

천 부속물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³/sec 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경 25m/m이하 월액 10,000원 · 관경 50m/m이하 월액 40,000원 · 관경 75m/m이하 월액 60,000원 · 관경 100m/m이하 월액 100,000원 · 관경 200m/m이하 월액 120,000원 · 관경 300m/m이하 월액 160,000원 · 관경 400m/m이하 월액 220,000원 · 관경 500m/m이하 월액 280,000원 · 관경 600m/m이하 월액 360,000원 · 관경 700m/m이하 월액 500,000원 · 관경 800m/m이하 월액 600,000원 <p>※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p>	<p>점용</p> <p>가. 전기사업 연액 m³/sec 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경 25m/m이하 월액 10,000원 · 관경 50m/m이하 월액 40,000원 · 관경 75m/m이하 월액 60,000원 · 관경 100m/m이하 월액 100,000원 · 관경 200m/m이하 월액 120,000원 <p>4. 유수 의 점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경 300m/m이하 월액 160,000원 · 관경 400m/m이하 월액 220,000원 · 관경 500m/m이하 월액 280,000원 · 관경 600m/m이하 월액 360,000원 · 관경 700m/m이하 월액 500,000원 · 관경 800m/m이하 월액 600,000원 <p>※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치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p>
--------------	--	---

	<p>치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000㎡ 당 200원씩 적용한다.</p> $\text{초당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2m)}}{1462 \times 60}$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 마다 10.000원씩 가산 	<p>산정하여 1.000㎡ 당 200원씩 적용한다.</p> $\text{초당인수량} = \frac{\text{관경}^2 \times \text{관내유속(통상2m)}}{1462 \times 60}$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 0.5㎡/sec 증가시 마다 10.000원씩 가산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5. 지하수의 유수 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농업용수의 배수</p> <p>제4항 나목의 3분의 1</p> <p>※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p> <p>기타 법 제14조에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항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p>가. 농업용수의 배수</p> <p>제4항 나목의 3분의 1</p> <p>※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기타용수의 배수</p> <p>기타 법 제14조에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항 나목의 4분의 1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채취	허가당시 조사한 토석 모래 · 모래 · 자갈 · 도매가격의 평균치의15/100	7. 토석·모래·자갈의채취 허가당시 조사한 토석 모래 · 모래 · 자갈 · 도매가격의 평균치의15/100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 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 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천 산		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탈의장(매장 포함)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탈의장(매장 포함)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5/100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1/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공시지가 표준액의 1/10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